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전 부서	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경영지원팀	보안 및 비밀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비상 대비 계획	▷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 재난대비종합계획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안전실	정보통신 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 자료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 관련 문서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주거지 주차팀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주차 부정단속 신고자 명단 ▷ 공개함으로써 신고자 및 신고자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신고자 및 신고자가족 등의 신변 보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안전실	주요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시설의 경비위탁 내용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방재·방법 업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4.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안전실 도서관사업팀 체육사업팀 레포츠사업팀 문화사업팀	범죄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시설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주요시설 순찰 업무일지 ▷주요시설 경비시스템 ▷주요시설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주요시설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영지원팀	수사관련 정보	▷징계의결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보장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경영지원팀	심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p style="text-align: center;">각종 위원회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p>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실</p>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 및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 결과 처분지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p style="text-align: center;">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p>
<p style="text-align: center;">경영지원팀</p>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등의 입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p>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직원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문제 및 시험출제 관리, 시험 시행관련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사항(필기, 면접)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 초래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업무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 가격조서 등) ▷개찰 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전 부서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와 관한 정보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문화체육시설 회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주거지주차·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감사실 경영지원팀	민원사무 처리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 된 개인의 정보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민원인이 본인 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 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감사실	감사실시 결과	▷ 감사실시 결과 개인 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경영지원팀	직원 징계	▷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 대장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인사관리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직원 인적사항	▷ 특정 직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의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주민 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안전실	시스템 관리	▷ 행정전자서명 신청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경영지원팀	법인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있는 정보 ▷ 경영·영업상의 정보 ▷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경영·영업상 비밀)
	입찰(제안) 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경영·영업상 비밀)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해당없음			